

심사보고서

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

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410
----------	-----

2023. 11. 1.(수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발의일자 : 2023년 10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11월 1일

-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제승 보건복지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출연개요

(단위:백만원)

연번	출연기관	소관부서	출연내역	예정금액	비고
	2개 기관			2,108	
1	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	복지정책과	서비스원 인건비 및 운영·사업비	1,936	
2	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	보건정책과	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	172	

다. 주요내용

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¹⁰⁾ 출연금 : 1,936백만원

○ 출연목적

- 도민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로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문 역할 확대
-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민관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道단위 컨트롤 타워 구축·운영

○ 출연 내역 및 예정금액

출연내역	예정금액	재원	비고
합 계	1,936백만원	도비 100%	
사회서비스원 인건비	1,016백만원		
사회서비스원 운영·사업비	920백만원		

○ 기대효과

- 공공성·전문성 향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신뢰도 제고
-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을 통해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
-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구심적 역할 수행

10)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특수법인

②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¹¹⁾ : 172백만원

○ 출연목적

-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간호수급문제 개선 및 간호사 타지역 유출방지
- 감염병대응, 공공의료사업 수행 등 질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마련
- 안정적인 간호인력 공급을 통한 단양군보건의료원의 성공적 정착

○ 출연 예정금액 : 172백만원

○ 출연내역 : 지방의료원 등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

○ 기대효과

-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로 원활한 감염병전담병원 역할수행, 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 제공, 재활병동 운영 등 보다 수준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

3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 및 시기의 적정성

- 본 출연계획안은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및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음.

11)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

- 이는 무분별한 출자·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.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※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: 출자·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, 출자·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·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.

- 또한 2024년도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전 미리 제출된 바, 제출 시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나. 출연 근거 및 주요내용 검토

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 : 1,936백만원 (23년 출연과 동일금액)

- 본 출연계획안은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,
 -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복지시설 수탁 운영과 민간 제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도단위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인건비 지출 및 운영·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타당함.

□ **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**

제29조(보조금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·도 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- 출연금 재원 조달에 있어, 2023년에는 국비 50%, 도비 50%였던 것이 2024년도에는 도비 100%로 변경됨. 이는 기재부의 지방정부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의 국비지원 불가 방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.

□ **사회서비스원 국비 지원방침 변경 (복지부)**

< **그간 국비지원 방침** > ※ '19년부터 시범사업 추진

- 시도 서비스원 설립 후 국비 지원(3년 50%, 이후 30%) *18. 7월 당정청 협의

< **'24년 예산확보 현황** >

- 복지부(안) 국비 133억원 기재부 전액 삭감

- 우리 도 배정(안) 국비 10.1억원(전년대비 4.6% 증) 삭감

- * (기재부) 지방정부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 국비지원 불가
- * (복지부) 충북 등 신생기관만이라도 국비 요청 하였으나, 전액 국비가 삭감됨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
- * (전국 사회서비스원장단) 원장단 TF팀 구성 후 정부 및 국회 예산 확보 대응

- 또한, 에너지 비용 및 물가상승 등 운영비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, 본 출연계획안에 따른 2024년도 출연금은 2023년 출연금(1,936백만원)과 동일한 금액이 제출되었음.

- 이는 기재부의 방침에 따라 국비지원이 중단돼, 도비 100% 지원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응한 것으로 판단됨.

※ 충북도의 출연금 동결을 위한 조치

- 인원 감축(20명 →15명) *現 근무 직원수는 13명임.
- 운영비 중 광고비, 행사운영비, 교육훈련비 등 감액

- 다만, 사회서비스원 인력을 20명에서 15명으로 감축하여 운영할 경우, 재정은 절감되겠지만, 이로 인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.
- 따라서 복지부 및 전국 사회서비스원장단과의 협조를 통해 국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,
- 인력 감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축소 및 직원 업무량 가중 등의 문제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, 필요시 추후 예산에 반영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.

2]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: 172백만원 (23년 160백만원 출연보다 12백만원 증액)

- 본 출연계획안은 「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제8조에 따라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,
- 내용 측면에서 볼 때, 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및 이직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간호사 육성 장학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·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진흥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됨.

□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

제8조(출연) 도지사와 시장·군수는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-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에 대한 수요급증 및 감염병 발생 등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급증과 정부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의 확대에 따라 간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, 충북도 내 대학 간호학과 졸업생 중 15% 정도(20년 기준)만이 도 내 의료기관에 취업하고 있고, 또한 도내 공공의료원의 경우 간호사 수가 정원 대비 19% 정도 부족한 상황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.

- 따라서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, 졸업 후 2년간 도 의료원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<충청북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(청주·충주의료원) 간호인력 부족현황>

(단위: 명/ '22.10. 기준)

구 분	계	청주의료원	충주의료원
정 원	507	285	222
현 원	408	221	187
과 부 족	△99(20%)	△64(22%)	△35(16%)

-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도 출연금이 2023년 160백만원에서 2024년 172백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지원 대상기관 및 사업량이 기존 2개소 (청주·충주의료원), 40명에서, 2024년 5월 개월되는 단양군보건의료원의 간호인력 지원 필요성에 따라 3개소, 43명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임.

□ 증액사유

- 대상기관 증가(2개소 → 3개소/청주·충주의료원, 단양군보건의료원)에 따른 사업량 증가
- 40명('23년) ⇒ 43명('24년, +3명) ※ 단양군 사업참여요청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출연계획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, 각 기관별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해당 법 및 조례에 규정된 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, 제출 시기 또한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 전에 제출된 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출연금의 적정성 측면에서 볼 때,
 - 충북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복지시설 수탁 운영과 민간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道단위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,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 다만, 제출된 출연계획안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인력을 20명에서 15명으로 감축 시 문제가 없는지 점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 -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및 이직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, 지역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본 출연계획안은 법적,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, 본 의결에서는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, 출연 금액은 이후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」

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

의안 번호	41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10월 4일

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< 보건복지국 소관 >

(단위:백만원)

연번	출연기관	소관부서	출연내역	예정금액	비고
	2개 기관			2,108	
1	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	복지정책과	서비스원 인건비 및 운영·사업비	1,936	
2	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	보건정책과	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	172	

1)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¹²⁾ 출연금 : 1,936백만원

○ 출연목적

- 도민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로 사회서비스의 공공 부문 역할 확대
-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민관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道단위 컨트롤타워 구축·운영

○ 출연 내역 및 예정금액

출연내역	예정금액	재원	비고
합 계	1,936백만원	도비 100%	
사회서비스원 인건비	1,016백만원		
사회서비스원 운영·사업비	920백만원		

12)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특수법인

○ 기대효과

- 공공성·전문성 향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신뢰도 제고
-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을 통해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
-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구심적 역할 수행

②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¹³⁾ : 172백만원

○ 출연목적

-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간호수급문제 개선 및 간호사 타지역 유출방지
- 감염병대응, 공공의료사업 수행 등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마련
- 안정적인 간호인력 공급을 통한 단양군보건의료원의 성공적 정착

○ 출연 예정금액 : 172백만원

○ 출연내역 : 지방의료원 등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

○ 기대효과

-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로 원활한 감염병전담병원 역할수행,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, 재활병동 운영 등 보다 수준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
5. 기타

13)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

1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복지정책과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복지보훈팀	김경희	정영수	김정화	3013

기관명	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 장 : 연명모 ○ 기관개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재지 : 청주 흥덕구 공단로 87(복대동,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) - 규모 : 1개소(전용면적 379.8㎡) - 기관성격 :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법인 - 주된사업 : 민간 제공기관 지원,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·조사,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수탁·운영 등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연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연 예정금액 : 1,936백만원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백만원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rowspan="2">2023년 예산액 (출연액)</th> <th rowspan="2">2024년 요구액</th> <th colspan="5">재원별</th> </tr> <tr> <th>계</th> <th>국비</th> <th>도비</th> <th>시군비</th> <th>기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회서비스원 운영비</td> <td>1,936</td> <td>1,936</td> <td>1,936</td> <td>-</td> <td>1,936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	구 분	2023년 예산액 (출연액)	2024년 요구액	재원별			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기타	사회서비스원 운영비	1,936	1,936	1,936	-	1,936	-	-
구 분	2023년 예산액 (출연액)	2024년 요구액	재원별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기타																					
사회서비스원 운영비	1,936	1,936	1,936	-	1,936	-	-																					
출연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용자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,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 등 공공부문 역할 확대 ○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·사업비 지원 필요 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7조(시·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) ① 시·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시·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 - 제29조(보조금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·도 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감독부서의견(중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, 시군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 및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○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연기관 현황 3. 출연사업계획서 																							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경영평가) : 해당없음
-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 : 해당없음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(이하 “법”이라고 한다.)」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,
 - '23.6.1일 개원하여 시설 컨설팅,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·심리지원, 토론회와 지역사회보장계획, 지역주민 욕구조사 및 종사자 보수 실태 조사, 돌봄모델 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서비스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 중임
- 그간 사회서비스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·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었으나, '24년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도비로 출연 예정이며,
-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도민에게 공평하고 양질의 서비스 수혜를 위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속성 있는 기관 운영 필요
- 이에,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기관 운영 초기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운영 예산의 '원안의결'을 건의드립니다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백만원)

내역	2023년 예산액(최종)(C)	2024년 예산안			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(B-C)
사회서비스원 운영비	1,936	1,936	1,936	-	-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1-②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

설립근거	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		전화번호: 043-820-3601 홈페이지: cb.pass.or.kr	
주요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설립등기('22. 11. 24.) 개원('23. 06. 01.) 	기관형태	출연기관	
직원현황 ('23.8월 현원기준)	계	정규직	비정규직	
	13명	13명 * 별도 공무원 파견 2명	-	
임원	직책(직책명)	성명	소속(직위)	임기
	상임이사	연명모	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	'22.11.24.~'25.11.23.(3년)
	비상임이사	김현진	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	'22.11.24.~'24.11.23.(2년)
	"	김혜정	복지실천여성협의회 이사	'22.11.24.~'24.11.23.(2년)
	"	변창수	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장	'22.11.24.~'24.11.23.(2년)
	"	유응모	오송종합사회복지관장	'22.11.24.~'24.11.23.(2년)
	"	윤경미	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	'22.11.24.~'24.11.23.(2년)
	"	이규하	차미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	'22.11.24.~'24.11.23.(2년)
	"	임진숙	한국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연합회장	'22.11.24.~'24.11.23.(2년)
	"	최현숙	충청북도학원장학회 이사장	'22.11.24.~'24.11.23.(2년)
	"	한규량	한국교통대학교 경영복지학부 교수	'22.11.24.~'24.11.23.(2년)
	"	이제승 (당연직)	보건복지국장	재임기간
	감사	노동영	변호사	'22.11.24.~'24.11.23.(2년).
	"	김경희 (당연직)	복지정책과장	재임기간
	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역량있는 공급주체 진입·성장을 위한 민간 제공기관 지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관련사업 수탁·운영 충북형 운영모델 제시를 위한 사회서비스 연구 등 		
출연금		100백만원		
그 간 예산지원 현 황 ※운영비(국비 50%, 도비 50%) ※설치비(국비 100%)	2022년	운영비	156백만원	
		설치비	500백만원	
	2023년	운영비	1,936백만원	

1-③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	구분	출자	
주관부서	복지정책과		출연	1,936백만원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이용자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 공공부문 역할 확대 필요
-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민관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道단위 컨트롤타워 구축·운영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
- 사업기간 : 2024. 1 ~ 12월
- 출연액 : 1,936백만원
- 주요사업
 - 역량있는 공급주체 진입·성장을 위한 민간 제공기관 지원
 -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관련사업 수탁·운영
 - 중복형 운영모델 제시를 위한 사회서비스 연구 등
- 출연근거 :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
□ 산출기초

(단위:백만원)

구분	금액	산출내역	재원
합계	1,936		
사회서비스원 인건비	1,016	5,643천원×15명×12월≒1,016백만원 ※ 인건비, 4대보험, 퇴직금, 제수당 등	도비 100%
사회서비스원 운영·사업비	920		도비 100%

□ 기대효과

-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을 통해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
-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 강화 등 사회서비스 제공의 구심적 역할 수행

□ 출자·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 제한 및 구심적 역할 부재 우려
-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따른 기관 운영 차질

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7조(시·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) ① 시·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시·도 사회서비스원(이하 "시·도 서비스원"이라 한다)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설립한 시·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시·도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④ 시·도 서비스원의 설립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시·도 서비스원의 사업) ① 시·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
 -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
 - 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
 - 4.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
 - 5.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·회계·법무·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·자문
 - 6.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
 - 7.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·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
 - 8.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
 - 9.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
 - 10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그 밖에 시·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(보조금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·도 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제30조(재원) 시·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·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

2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보건정책과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공공의료팀	임헌표	하미경	지동식	3152

기관명	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						
출자·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 사 장 : 김영환 ○ 일반현황 : (소재지)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-1 (주요사업) 장학사업, 인재양성사업 						
출자·출연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연 예정금액 : 172백만원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 백만원) 						
	구분	2023년 사업비	2024년 사업비*	재원별			
	계	320	344	계	도비출연금	인재양성재단	의료원 등
				344	172	34.4	137.6
※ 재정부담 비율 : 도 50%,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10%, 의료원 등 40%							
출자·출연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로 공공병원으로서의 공익적 기능강화 및 포괄적 공공의료서비스 안정적 제공 	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 ※ 제8조(출연) 도지사·시장·군수는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 						
지도감독부서인권(중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충북의 우수인재를 발굴·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각종 장학사업과 함께 대학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음. ○ 청주·충주의료원에서는 부족한 간호사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수급 방안이 필요함. ○ 단양군보건의료원 개원이 예정('24.5월)됨에 따라 사업대상기관 추가 및 출연금이 소폭증가 되었으며, 단양군보건의료원의 원활한 진료 기능 확보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동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임 ○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장학사업과 연계하여 생활장학금 지원에 소요되는 출연금 지원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 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연기관 현황(기관연혁, 인원 및 조직현황 등) 3. 출연사업계획서 						

2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경영평가) 경영층 리더십 및 전문성, 경영혁신활동, 국·도정우수시책 추진실적 우수
- 공공의료분야 간호인력 장학생선발 신설 등 도정과제와의 연계성을 높여 사업추진함
-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 특이사항 없음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은 「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4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
- 청주·충주의료원에서 부족한 간호사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은 실정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임
- 단양군보건의료원이 사업대상기관에 추가되어 예산이 소폭 증액되었고, 해당기관은 '24. 5월 개원 예정으로 원활한 진료기능 확보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동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간호인력을 공급받을 필요있음
- 이에 지방의료원 등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한 의무복무(2년)로 간호사 수급 안정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원안의결을 건의드립니다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백만원)

내역	2023년 예산액(최종) (C)	2024년 예산안			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 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	160	172	172	-	12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2-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

설립근거	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				전화번호: 043-224-0221 홈페이지: www.chrdf.or.kr			
주요연혁	- '08. 2월 설립등기 - '17. 8월 국민교육발전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 - '22. 7월 제5대 김영환 이사장 취임		기관형태	출연기관				
인원현황 (23.8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	
	21명		20명		1명			
인 원	직책(직책명)	성명	소속(직위)		임기			
	이사장	김○○	충청북도지사		재임기간			
	이 사	윤○○	충청북도교육감		"			
	"	이○○	청 주 시 장		"			
	"	조○○	충 주 시 장		"			
	"	김○○	제 천 시 장		"			
	"	최○○	보 은 군 수		"			
	"	황○○	옥 천 군 수		"			
	"	정○○	영 동 군 수		"			
	"	이○○	증 평 군 수		"			
	"	송○○	진 천 군 수		"			
	"	송○○	괴 산 군 수		"			
	"	조○○	음 성 군 수		"			
	"	김○○	단 양 군 수		"			
	"	김○○	충청북도 과학인재국장		"			
	"	신○○	충청북도 행정국장		"			
	"	김○○	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		"			
	"	윤○○	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		"			
	"	이○○	충북대학교 교수		22.04.03. ~ 24.04.02.			
	"	오○○	대신정기화물 회장		22.04.19. ~ 24.04.18.			
	"	이○○	유진테크놀로지 대표		22.04.19. ~ 24.04.18.			
	"	임○○	前 충북여약사회 회장		22.05.14. ~ 24.05.13.			
	"	권○○	신한은행충북본부장		22.06.22. ~ 24.06.21.			
	"	김○○	한국교원대 교수		23.06.29. ~ 25.06.28.			
	"	이○○	前 대성중학교 교장		23.06.29. ~ 25.06.28.			
"	류○○	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		23.06.29. ~ 25.06.28.				
"	이○○	농협중앙회충북지역본부장		22.06.22. ~ 24.06.21.				
"	정○○	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원장		22.06.22. ~ 24.06.21.				
감사	송○○	충청북도 라이즈추진과 과장		재임기간				
"	임○○	한빛회계법인사무소공인회계사		23.06.29. ~ 25.06.28.				
주요기능	- 우수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							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	80,000			지방공기업발전기금 (단위:백만원)			
최근3년 간 예산 현황(단위: 백만원)	연도	2021	2022	2023	재무현황 (백만원) '22.12.31기준	-		
	일반 회계	예산액	6,461	6,308		9,255	자산	78,641
		지자체 지원액	686	710		2,798	부채	142
2022년 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		총수익			총비용			
		3,288			2,178			
					당기순이익			
					1,110			

2-③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	구분	출자	
주관부서	보건정책과		출연	172백만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지방의료원의 간호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간호대 재학생 인재 양성
- 장학금 지원을 통한 간호인력 수급안정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
- 사업기간 : 2024. 1 ~ 12월
- 총사업비 : 344백만원(출연금 172백만원)
- 주요내용 :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
 - 지원대상 : 간호학과 4학년 생활장학금 지원(1인 800만원/년, 43명)
- 출연근거 : 「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제8조

□ 산출기초

(단위:백만원)

구분	금액	산출내역	분담비율
운영재원 합계	344	8,000천원×43명 = 344백만원	100%
도 출연금	172	8,000천원×43명×50% = 172백만원	50%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	34.4	8,000천원×43명×10% = 34.4백만원	10%
청주·충주의료원, 단양군보건의료원	137.6	8,000천원×43명×40% = 137.6백만원	40%

□ 기대효과

- 공공간호사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자원 타지역 유출방지
-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 안정화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

□ 출자·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우수한 간호인력 타지역 유출 및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간호인력 채용난 지속
-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축소, 공공보건협력체계 구축사업 추진 어려움 등 각종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임

지방재정법 및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

□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

제4조(사업)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- 1. 충북인재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
- 2.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
- 9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·위탁하는 사업
- 10. 그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

제8조(출연)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